의안번호	제 522 호	
의 결	2016년 월 일	
연 월 일	(제 352 회)	

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이종욱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11월 22일

###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522

#### (이종욱 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6년 11월 22일

발 의 자:이종욱, 정영수, 윤홍창

임헌경, 이숙애, 최광옥

박봉순 의원(7인).

#### 1. 제정이유

스마트폰 등 모바일의 대중화와 함께 주민의 의사소통 및 정보 이용 방법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,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방식으로 충북교육에 대한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 충북교육 구성원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, 충북교육 구성원 상호간에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구성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성원의 교육참여 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(안 제3조)
- 나.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, 이용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·관리(안 제5조)
- 다.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기념품 및 상품권 제공(안 제6조 2항)
- 라.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관계부서협의 :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홍보담당 부서와 협의완료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16. 11. 2. ~ 2016. 11. 21.(20일간)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###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에 관한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 충북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,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소셜미디어" 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, 경험,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 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.
- 2. "충북교육 구성원(이하 "구성원"이라 한다)"이란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 충북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도민들을 말한다.
- 3. "콘텐츠" 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·부호·음성·음향·이 미지·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- 4. "소셜계정"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식별 정보를 말한다.
- 제3조(소셜미디어의 운영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구성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성원의 교육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교육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
  - 2. 구성원 의견, 상담 등 구성원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
  - 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4조(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)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5조(게시물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,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.
  - 1.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
  - 2.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
  - 3.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
  - 4. 특정기관·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
  - 5.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
  - 6.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
  - 7.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
  - 8.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
  - 9. 그 밖에 욕설, 장난, 음란물, 연습성 오류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
- 제6조(행사의 운영)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·홍보,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.
  - 1.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
  - 2. 교육청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
  - 3. 교육청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

- 4. 그 밖에 교육청을 홍보하거나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
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.
-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,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7조(포상)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구성원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8조(개인정보보호)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,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-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
  - 2.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
  - 3. 통계작성·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
  - 4.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 법 령

### □ 국가정보화 기본법

- 제4조(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,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과 구 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 고 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,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) 정부는 인터넷, 원격정보 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○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·운영하고자 함

#### 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따른 콘텐츠 제작·관리 및 행사운영비 소요 경비 등

#### 3. 관련조문

- 안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
- 안 제6조 행사의 운영

#### 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 요인
  - 콘텐츠 제작·관리 및 행사운영비 소요 경비
- 나. 추계의 전제
  - 수시
- 다. 추계결과 : '17년부터 향후 5년간 연 80,000천원
- 라. 재원조달방안 : 교육비특별회계 100%

### 5. 연도별 비용 추계서 : 붙임

〈단위 : 천원〉

구	분	계	1차년도 (2017년도)	2차년도 (2018년도)	3차년도 (2019년도)	4차년도 (2020년도)	5차년도 (2021년도)
세	출	80,000	16,000	16,000	16,000	16,000	16,000

# 〈연도별 비용 추계표〉

〈단위 : 천원〉

구 분	1차년도 (2017년도)	2차년도 (2018년도)	3차년도 (2019년도)	4차년도 (2020년도)	5차년도 (2021년도)	계
세 출	16,000	16,000	16,000	16,000	16,000	80,000
SNS 콘텐츠 제작·관리 운영	4,800	4,800	4,800	4,800	4,800	24,000
SNS 활동우수자 기념품 및 상품권 지급	11,200	11,200	11,200	11,200	11,200	56,000

6. 작성자 : 공보관 홍보담당 홍종민